제226회 제1차 정례회 광 진 구 의 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20.

복지건설위원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1535호

2019. 6. 20.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5. 20. 나. 회부일자 : 2019. 5. 24.

다. 상정일자 : 2019. 5. 29.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 장 경 희 의원

나.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중 부정확한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되도록 함과 동시에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하 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

- 학교와 유치원 관련 금역구역을 확대(안 제5조제2호)
-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를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정비(안 제5조제3호)
- "유치원"은 제2호에 별도 규정하고, 나머지 시설은 해당 시설이 적용받는 상위 법률을 명시하고, "출입구"를 "경계선"으로 함(안 제5조제7호)
- 경찰서장, 병원 등에 대한 지원 요청 규정(안 제9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예산조치 : 추후 협의

3.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임문섭)

- 의안번호 제153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2019년 5월 20일 장경희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5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내용의 부정확한 내용을 보완하고, 상위법에도 부합하도록 함과 동시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여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어른들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1)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일부개정조례안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제5조에 대한 개정으로 그 주요 내용을 각 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현행 조례 제5조제2호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이라 함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말하며, 여기서 "학교"라는 개념에는 "유치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5조제7호에 "유치원"을 별도로 포함시키고 10미터 이내의 구역이라고 규정하여 제2호의 절대보호구역 (50미터 이내)보다도 축소된 범위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모순이 있었는데,
 - 안 제5조제2호는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금연구역 범위의 기준을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서 "경계선"으로 변경하여 금연구역이 확대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관계 법률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보다 개선된 적절한 개정 내용이라고 사료됨.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 또한 안 제5조제2호에서는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하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u>통학로</u>"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을 "학교의 통학로"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단순한 거리 기준의 금연구역 지정보다는 실질적으로 등·하교 시 학생들이 담배연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공간으로서의 "학교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적극 반영된 부분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이며, 향후 단계적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u>절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u>에 대해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자체에서 획일적 인 규제를 하고 있으며, <u>금연구역 지정과 관련</u>하여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²⁾하여 별 도로 제정되어 운영될 사항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舊 학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u>"학교"</u>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유치원</u>,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 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 과거 「학교보건법」은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절대정화구역"은 "절대보호 구역"으로 개정되었음.

²⁾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u>지방자치단체</u>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중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조혜</u>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나. 안 제5조제3호는 현행 조례 제5조제3호의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를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승차대(또는 표지판)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 제 5조제6호의 "지하철역"과 제7호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라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동일한 거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한 내용이며, 이 역시 금연구역 범위가 확대된 효과가 있다고 보임.
- 다. 안 제5조제7호는 현행 조례 제5조제7호의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을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개정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경계선"기준과 부합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한 개정 내용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중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연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내용의 부정확한 부분을 보완하고, 상위법에도 부합하도록 함과 동시에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 도록 함으로써 어른들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자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법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